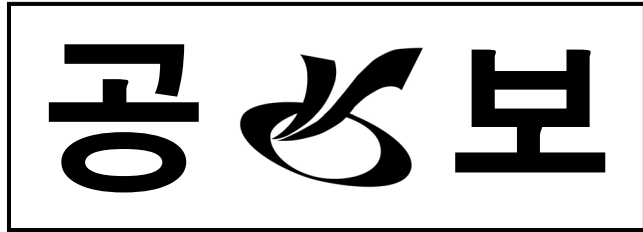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581호
2007년 6월 4일 월요일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26호 민영주택건설사업변경인가고시 2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27호 주택재건축사업변경인가고시 3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28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가고시 4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07-2호 공직자 재산사항 공개목록 6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498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 소1-4호선)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8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504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1

회 람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문화공보과

고 시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26호

민영주택건설사업변경인가고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변경인가하고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5월 30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사 업 명 : 가좌연립재건축아파트 건립공사
2. 사업주체 : 가좌연립재건축조합 조합장 이규묵(인천 서구 가좌동 143-62번지) (주)지구
종합건설 대표 박찬하(인천 서구 연희동 746-5번지)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43-62번지
 - 나. 대지면적 : 1,816㎡
 - 다. 연 면 적 : 5,419.4592㎡
 - 라. 사업규모 : 지상13층 / 1개동 / 52세대
4. 사업기간 : 2004. 12 ~ 2007. 6
5. 사업시행인가일 : 2003. 6. 30
6. 변경사항 : 사업기간 2004. 12 ~ 2006. 9 ⇒ 2004. 12 ~ 2007. 6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27호

주택재건축사업변경인가고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변경인가하고 동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5월 30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사 업 명 : 옥일연립재건축아파트 건립공사
2. 사업주체 : 옥일재건축조합 조합장 이도환 / 태훈종합건설(주) 대표 김영섭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23-2,3번지
 - 나. 대지면적 : 2,996㎡
 - 다. 연 면 적 : 14,648.878㎡
 - 라. 사 업 비 : 17,735,900,000원
 - 마. 사업규모 : 지상10층 / 1개동 / 93세대
4. 사업기간 : 2002. 2 ~ 2007. 6. 30
5. 사업시행인가일 : 2002. 3. 21.
6. 변경사항 : 사업기간 2002. 2~2007. 4. ⇒ 2002. 2~2007. 6.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28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주택법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하고 동법 제16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5월 30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사 업 명 : 민영아파트 건립공사
2. 사업주체 : (주)에이치원디앤씨 대표 김 영애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서구 검단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21블럭
 - 나. 대지면적 : 18,196.60㎡
 - 다. 연 면 적 : 59,470.49㎡
 - 라. 사 업 비 : 153,658,256,000원
 - 마. 사업규모 : 지하1층 지상12~ 15층 5개동 267세대
4. 사업기간 : 2007.06 ~ 2009.08
5.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가. 건축법 제15조의 공사용 가설건축물축조신고
 - 나.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 다.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 공급신청

공직자 재산사항 공개목록

공직자윤리법 제13조(재산등록사항의 목적외 이용금지등) 규정에 의거 누구든지 재산등록사항을 이 법에 정한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인천광역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07-2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제1항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의원 1명의 재산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7년 4월 25일

인천광역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

공 개 목 록

소 속	인천광역시 서구	직 위	의회의원	성 명	임동주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상세	현재 가액		비 고
▲ 건물(소계)			132,000		
본인	아파트	인천 서구 가좌동 122-2번지 현대아파트, 84.81㎡	132,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					
본인	자동차	2000년식, 매그너스, 배기량(2000CC)	0(7,000)		
▲ 현금(소계)			65,000		
본인		현금	65,000		
▲ 예금(소계)			46,453		
본인		LIG손해보험 900, 가좌2.3.4동새마을금고 3,778, 농협 7,993, 대한생명보험 1,263, 미래에셋생명보험 3,882, 삼성생명보험 10,665, 신한생명보험 3,576	32,057		
배우자		L.G.PhilipsDisplays㈜새마을금고 4,600, 대한생명보험 4,512	9,112		
장남		대한생명보험 2,243, 삼성생명보험 2,052	4,295		
차녀		대한생명보험 122, 삼성생명보험 867	989		
▲ 채무(소계)			123,007		
본인	금융기관 채무	LIG손해보험 160, 국민은행 120,847, 신한생명보험 2,000	123,007		
	총계		120,446	※ 순증감액: 120,446천원 (가액변동 없음)	
▲ 전속사항(소계)			0		
부		고지거부	0		
인		고지거부	0		

공 고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498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1-4호선)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시설 [도로명:소1-4호선, 사업명:연희지구 국민임대 아파트 진입로 확포장공사] 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공람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공람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0) 및 건설과(560-452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분은 공람 기간(공고일로부터 20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5월 29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공고내용

가. 연희지구 국민임대 아파트 진입로 확포장공사

구 분	연희지구 국민임대 아파트 진입로 확포장공사	비 고
사업의 시행지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22번지 일원	
사업의 종류 및 규모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소로 1류 4호선 ○ 규 모 : L=14m, B=160m	
사업 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북3길 30 ○ 성 명 : 인천광역시서 도시개발공사사장	
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2007. 5. ○ 준공예정일 : 2007. 12.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별첨 참조”	
사용 또는 수용할 건물 및 지장물 조서	“별첨 참조”	

용 지 조 서

조서 번호	소재지	지 번	지역	지 적	면적		잔여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도로내	도로외		주 소	성 명	지 분	주 소	성 명	권리내용	
1	연희동	722	도	1,415.7	1197.0	0.0	218.7	인천광역시						
2	연희동	701-21	채	598.7	598.7	0.0	-	국(산림청)		1242/11942	인천광역시		공유자	
3	연희동	산 50	임	3,186.0	21.1	0.0	3,164.9	인천광역시(서구)						
계					5,200.4	1,816.8	-	3,383.6						

지 장 물 총 괄 표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 량	비 고
건 축 물		해당없음	
한 전 주		6 EA	
체 신 주		2 EA	
도로명판		1 EA	
가 로 등	전주부착식	3 EA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504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30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저소득(연간 종합소득 1,200만원이하) 65세 이상인 고령자소유의 주택가액 3억원 이하인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부담을 경감.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환지예정지에 대해 급격하고도 과중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경감하고, 장기간 사업지연에 따른 납세자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65세 이상인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자)의 소유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주택가액이 3억원이하인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100분의 25 경감.
-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공여되는 토지 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공사완료 공고 시까지 종합 합산과세에서 분리과세로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201)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와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6조의2(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한 고통자(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자에 한한다)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 제2항 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27조의2(인천광역시 서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감면)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 제9조·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인가를 받은 지구에 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공여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시행인가일부터 공사완료 공고 시까지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82조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다만, 당해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07년 6월 1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